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54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6. 2. 9.
4. 회부일자 : 2026. 2. 12.

II . 제안이유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등을 위한 2026년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 증원

III . 주요내용

1. 정원의 총수 증원 (안 제2조): 증 19명 (8,039명 → 8,058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 증 19명 (873명 → 892명)
2.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총계 증원: 증 19명 (8,039명 → 8,058명)

○ 특정직 정원 조정: 증 19명 (873명 → 892명)

- 5급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 증 19명 (822명 → 841명)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별첨 1] 비용추계서

3. 협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 타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
입

나. 입법예고(2026. 1. 29. ~ 2026. 2. 1.)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별첨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별첨 3] 제외 통보 확인서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별첨 4] 검토의견서

사. 관계법규: [별첨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543호로 제출되어 2026년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산정인원 증가에 따른 지방공무원(특정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제출됨.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부가 2026년 총액 인건비 산정시 국가정책수요 중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13명)’, ‘시도평가관리센터 운영(4명)’, ‘교육활동 보호 강화(2명) 등의 시행을 위해 지방공무원(특정직) 19명 증원한 것¹⁾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정원 관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²⁾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³⁾를 기준으로 교육감이 조례⁴⁾로 정하도록

1)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2026.1.). 2026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안 제2조의 정원 총수 및 교육전문직원의 수를 개정하고, 안 제4조와 관련하여 ‘[별표 3]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등을 증원하는 것인바, 법률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의 19명 증원 중 가장 많은 인원(13명)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동 정책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⁵⁾.
- 동 정책은 2022년에 교육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2023년부터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등이 시행되었고⁶⁾, 2025년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3.1.][법률 제 21065호, 2025.10.1., 타법개정]」이 제정되면서 2026년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이루어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의2.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5)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2026.3.1.][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 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학생에게 이루어지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의 지원

나. 그 밖에 학생 등의 학습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2. ~ 5. 생략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지게 됨.

[그림-1]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연도별 추진 현황⁷⁾

| 구분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교육부 | 국정과제 확정 | 학생맞춤통합 지원 체계 안내 | | | |
| 교육(지원)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센터 교육협력복지과 이관(2024.1.)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구축 계획 안내 및 연수 | | | |
| 선도학교 |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 및 모델 개발 | | | |
| 초·중·고 | | |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모델 적용 (2024 ~ 2025) | 학생맞춤통합 지원 전면 시행 | |

- 이와 같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를 시행할 인력이 증원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동 개정조례안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증원 인력 13명의 직급은 모두 전문직(특정직)임.
 - 이는 교육부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시행을 위한 인력 증원에 앞서 각 시·도교육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원 인력을 일반직, 전문직(특정직)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증원 인력을 모두 전문직(특정직)으로 신청하였기 때문임.
 - 한편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확정 산정 현황을 살펴보면⁸⁾ 평균적으로 증원된 총 인원 대비 일반직 비율(70.5%)이 전문직(특정직) 비율(29.5%)보다 41%_P 나 높게 편성

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2026.2.).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안).

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603(2026.2.26.).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382번)’

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전문직 비율(93.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의 전문직 중심 인력 편성은 타 시·도교육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과연 해당 사무에 대해 직무 성격에 부합하는 직종 구성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와 직종 간 균형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덧붙여 동 정원조례는 교육청의 정원 총수와 종류별 정원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예산 및 인사 운용의 기준이 되는데, 지난 제333회 정례회에서 증원된 112명과 금번 동 조례안에 따라 증원 요구된 19명 등 총 131명에 대한 교육전문직 정원은 실제 채용인원에 맞춰 추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1]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년 총액인건비 국가정책수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확정산정 현황⁹⁾

(단위 : 명, %)

| 연번 | 시·도 | 직종별 인원수 및 비율 | | | | | |
|----|-----|--------------|--------|-------------------|-------|-----|-------|
| | | 일반직 | | 전문직 | | 전체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1 | 서울 | 1 | 6.7% | 14 ¹⁰⁾ | 93.3% | 15 | 100.0 |
| 2 | 부산 | 5 | 50.0% | 5 | 50.0% | 10 | 100.0 |
| 3 | 대구 | 4 | 80.0% | 1 | 20.0% | 5 | 100.0 |
| 4 | 인천 | 4 | 40.0% | 6 | 60.0% | 10 | 100.0 |
| 5 | 광주 | 6 | 100.0% | 0 | 0.0% | 6 | 100.0 |
| 6 | 대전 | 2 | 40.0% | 3 | 60.0% | 5 | 100.0 |
| 7 | 울산 | 3 | 75.0% | 1 | 25.0% | 4 | 100.0 |
| 8 | 세종 | 2 | 40.0% | 3 | 60.0% | 5 | 100.0 |
| 9 | 경기 | 52 | 92.9% | 4 | 7.1% | 56 | 100.0 |
| 10 | 강원 | 2 | 18.2% | 9 | 81.8% | 11 | 100.0 |
| 11 | 충북 | 18 | 100.0% | 0 | 0.0% | 18 | 100.0 |

9)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2603(2026.2.26.).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382번)' 자료 재구성.

(단위 : 명, %)

| 연번 | 시·도 | 직종별 인원수 및 비율 | | | | | |
|----|-----|--------------|--------|-----|-------|-----|-------|
| | | 일반직 | | 전문직 | | 전체 | |
| |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인원수 | 비율 |
| 12 | 충남 | 10 | 58.8% | 7 | 41.2% | 17 | 100.0 |
| 13 | 전북 | 2 | 12.5% | 14 | 87.5% | 16 | 100.0 |
| 14 | 전남 | 20 | 100.0% | 0 | 0.0% | 20 | 100.0 |
| 15 | 경북 | 22 | 100.0% | 0 | 0.0% | 22 | 100.0 |
| 16 | 경남 | 17 | 81.0% | 4 | 19.0% | 21 | 100.0 |
| 전체 | | 170 | 70.5% | 71 | 29.5% | 241 | 100.0 |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 | |
|----------|----------------|-------|----------------|
| 의안심사지원팀장 | 정진국(2180-8263) | 입법조사관 | 이가영(2180-8270) |
|----------|----------------|-------|----------------|